2026년도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

검진 대상

- **2008년 이전 석면공장 반경 2㎞ 이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타 업종 종사자**
  ※ 대상지역: 사상구 전 지역
- **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 10년 이상 거주자**
  ※ 대상지역: 학장동 새밭마을 등
- **과거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 및 가족**
  ※ 건축·건설업(슬레이트 시공·철거, 건물철거·수리업), 선박건조·수리업, 보일러·배관작업, 자동차 정비업, 주물 공장 등

검사 항목

- **기본(1차) 검진** – 의사진찰, 흉부 X-ray(석면질환 판독), 석면노출력 조사
- **정밀(2차) 검진** – 의사진찰, 흉부 CT(석면질환 판독), 폐기능검사
  ※ 기본검진 결과 석면질병 의심소견이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정밀검진 실시

검진 일시 및 장소

검진일자	검진장소	검진시간
5월 16일(토) ~ 17일(일)	**사상구청 별관**(사상구청앞) 학감대로 238-14	**오전 9시 ~ 오후 4시** (점심시간: 12시 ~ 오후 1시)
5월 30일(토)	**새밭마을 행복센터** 대동로159번길 107	

※ 오전 11시 20분, 오후 3시 20분 접수 마감(단, 대기 인원이 많으면 조기 마감)

안내 사항

1. **신분증을 꼭 지참**하시고,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
2. 오전에 많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오후에 오시길 바랍니다.
3. 정밀검진 결과 석면질병으로 진단되면 **'환경성 석면피해인정'** 또는 **'산재보상'**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4. **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지 포함)**을 소지하시면 보다 **빠른 검진**이 가능합니다.
5.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**마스크 착용**과 **손 소독**을 실시합니다.
6. 자세한 사항은 **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(055-360-3770~3)**로 연락주세요.

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
新나는 사상
PNUH 양산부산대학교병원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
PNUYH-EHCA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

2026년도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급여별 지급금액

피해인정질병		요양생활수당	장의비 및 특별장의비	특별유족조위금
원발성 악성중피종		1,994,66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/1,000)	3,766,76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/1,000)	56,501,400원 (장의비의 1,500/100)
원발성 폐암				
미만성 흉막비후		1,436,15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/1,000)		28,250,700원 (장의비의 750/100)
석면 폐증	1급			
	2급	957,43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/1,000)		18,833,800원 (장의비의 500/100)
	3급	478,71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/1,000)		9,416,900원 (장의비의 250/100)

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공장 또는 석면광산 주변 거주 등 **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**하는 제도
(근거법령: 석면피해구제법, 심의기관: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)

구제급여 종류

- 요양급여: 석면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(진료비, 약제비 등) 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
- 요양생활수당(매월 지급): 석면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
  ※ 석면폐증 2·3급은 24개월만 지급. 타 질병은 60개월 지급 후 유효기간 갱신 필요
- 장의비(일시금): 석면피해 인정 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-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(일시금): 석면피해 인정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

악성중피종, 폐암, 석면폐증(폐섬유화증 일종)으로 사망 후 15년 이내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

지급액 적용기간 2026.1.1. ~ 2026.12.31.

석면 건강검진 부산광역시 지원으로 무료, 기본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소견이면 정밀검진 시행함

- **기본검진**
  - 의사진찰
  - 흉부 X-ray 검사(석면질환 판독)
  - 석면노출력 조사(주거력, 직업력 등)
- **정밀검진**
  - 의사진찰
  - 흉부 CT 검사(석면검사 Protocol, 석면질환 판독)
  - 폐기능검사(일산화탄소확산능, 기도가역성 포함)